

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26.(월) 매일경제(온라인), “라이더 멈춰세운 ‘라이더 보호법’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권리·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,
-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또한 이 법에 따라 즉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
- 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*을 보장하는 법률로써,
- *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,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, 성희롱이나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등
 -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, 향후 개별법의 제·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모법(母法)이라 할 수 있음
- 정부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성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, 법안 논의를 지원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허기훈	(044-202-7761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지	(044-202-7762)